

청주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가단793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 고 1. A

2.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음

담당변호사 김준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바로니, 명지성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4,015,786원 및 그 중 13,994,995원에 대하여 2023. 11. 10.부터 2023. 12. 19.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3. 7. 31.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A에게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23. 7. 31. 접수 제71856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는 2023. 8. 31.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기 이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직전인 2023. 7. 31.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정한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한편, 피고 A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합계 677,85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별지 적극재산 내역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04,616,000원 상당의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별지 소극재산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230,756,000원 상당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 갑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3. 7. 31.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피고 A가 2023. 8. 31.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함에 따라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2023. 11. 10.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A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살피건대,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47113, 47120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였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불과 1달 만에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회사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피고 A와 사이에 2015년경부터 수년간 거래를 해오다가 2022. 8.경부터 거래가 단절되었는데 당시 미수금이 98,219,410원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이후 2023. 7.경 피고 A가 피고회사에게 다시 거래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회사로서는 위 미수금 및 앞으로의 거래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 받게 된 것이므로 피고 A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회사로서는 당시 피고 A의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을 알 수 없었던 관계로 피고 A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야 하지만, 만일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달리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익자에게 자금 융통을 간청하여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그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주면서 담보를 취득하였다면 수익자로서는 당시 채무자가 그 자금을 은닉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사후에 채무자가 그 자금 중 일부를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로서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을나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회사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회사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동희

별지